

청원제출용지

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국회법』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 원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 의원 : 김문수 의원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건명	『국회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6월 14일 (수)

소개의견

1. 지난 15대 국회동안 우리 국민들은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사적이해에 매몰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쟁기려 했던 어두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48조 제7항에 '의장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 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헌법에도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헌법상의 국익 우선 존중의무, 청렴 의무 규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이자 일종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한층 높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3. 그러나 우리 국회의 현실은 이 규정과 한참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인물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고, 교육부의 감시를 받는 학원경영자가 교육위원회에 있고, 제약회사 사장이 보건복지위에,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변호사가 법사위에 소속돼 활동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정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명실상부한 정부의 감독, 감시의 견제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의 이권 상임위 배정에 대한 제척, 회피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 적절한 시점에 제안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개정 청원이 국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소개하는 바입니다.

소개의원 : 김문수 의원

청원서

청원제목 : 『국회법』 개정 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2000년 6월 14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중, 박은정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홈페이지 : peoplepower21.org

『국회법』 개정 청원

1. 제안 이유

가. 지난 15대 국회동안 우리 국민들은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사적이해에 매몰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쟁기려 했다는 의구심을 가졌던 어두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 당시 특정 이해관계의 충돌을 면하기 어려운 상임위 배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바 있었지만 별다른 해결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16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간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대한 배반일 수 없습니다.

나. 우리 법제 역시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이해충돌이 없도록 배려한 혼적이 없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48조 제7항에 '의장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 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에도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헌법상의 국익 우선 존중의무, 청렴 의무 규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이자 일종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한층 높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다. 그러나 위와같은 규정은 구체성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우리 국회의 현실은 이 규정과 한참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인물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고, 교육부의 감시를 받는 학원경영자가 교육위원회에 있고, 제약회사 사장이 보건복지위에, 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법사위에 소속돼 활동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정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명실상부한 정부의 감독, 감시의 견제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구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은 해당 위원회를 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안건의 경우 심의, 투표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식이고 기본이기도 합니다.

마.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상임위 활동중 이권가능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사전에 방지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청원을 제출하는 바랍니다.

2. 주요 골자

가.(위원의 공정성, 청렴성)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거나, 그 직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2의 제1항)

나.(위원의 제척)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장은 당해 의원의 위원회 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8조2의 제2항)

다.(위원의 회피)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해당 국회의원은 스스로 위원회의 허기를 받아 해당 사안의 심의와 투표를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2의 제3항)

개정안 전문

- 제48조의2(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거나, 그 직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의원의 위원회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상임위 위원을 대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상임위원회에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특정 시안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시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기를 받아 해당 시안의 심의와 투표를 회피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p> <p>⑥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거나, 그 직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p>	<p><u>< 삭제 ></u></p>
<p><u>< 신설 ></u></p>	<p>제48조의2(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거나, 그 직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의원의 위원회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상임위 위원을 대체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상임위원회에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특정사안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기를 받아 해당 사안의 심의와 투표를 회피할 수 있다.</p>

청원제출용지

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입법 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 원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 의원 : 조순형 의원

김문수 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건명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입법 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6월 1일 (목)

소개의견

1. 고위 공직자의 임명이나 선출이전에 고위공직자 부패를 예방하고, 능력부족에 따른 국정파행을 막고, 고위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를 평가할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의 지침을 마련되지 못한 탓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고통의 맷가를 치러 왔습니다.
2. 이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비록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행적, 경력, 자질, 인격 등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하지 못했던 제도적 미비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게 됨으로써 공직의 투명성과 도덕성, 공직자의 직무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이는 곧 고위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 능력,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 국민대표자로서의 정치적 감각, 시대상황 변화와 사회집단 현상에 대한 정책 조망력등을 검증하고, 인선 자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승인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가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절차를 담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에 대한 입법 제정 청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입법제정 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5. 그리고 이 입법제정 청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인사청문회 운영에 반영되어 국민적 합의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장치로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조순형 의원

김문수 의원